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636
------	------

2021. 12. 20.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1일, 황인구 의원(찬성자 42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2021.12.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황인구 의원)

### 1.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6조)
-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에게 교육과 홍보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입법 현황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인터넷, 휴대폰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범죄를 의미

하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다양한 수법이 판을 치고 있음.

-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1.9.30.)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마련한 바 있음.
-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6개 주요은행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7.6.16.)한 바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2개소, 기초 24개소)에서는 전기통신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그러나 사기수법이 고도화, 기능화, 국제분업화 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단속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피해액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 〈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

(단위 : 억원, 건, %, %p)

구분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피해금액	2,431	4,440	6,720	2,353	△4,367(△65.0)
환급액	598	1,011	1,915	1,141	△773(△40.4)
환급률	24.6	22.8	28.5	48.5	20.0
피해건수	50,013	70,218	72,488	25,859	△46,629(△64.3)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4.14.) 인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통신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시책, 교육활동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기통신사기 피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안은 입법적 의의가 있음.

## 다. 주요 조문별 검토

### (1) 목적(안 제1조)

-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통신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통신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2)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제3조)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관련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용어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요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할 것임.
- 안 제3조는 시장에게 통신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증가하고 있는 통신사기의 사전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부 및 유관 단체 간 협력,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 등 단체장이 담당해야할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금융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금융회사에게 통신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서울시가 실시하는 통신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통신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정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고유사무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로부터 피해 자료 제공, 교육·홍보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부여하거나 별도의 조례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조례안과 같이 금융회사의 협력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sup>1)</sup>과 「행정규제기본법」<sup>2)</sup>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4) 시민의 권리 및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민에게 통신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서울시의 통신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통신사기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자구노력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이지만, 시민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시의 시책에 대한 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록 강제력이 없는 규정일지라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통신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해 ▶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위한 안내와 홍보, ▶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 취약계층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통신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단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 피해 예방 교육, ▶ 위탁교육의 실시와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개정(2019.4.30.)<sup>3)</sup>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조례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교육 내역 〉

년도	교육대상	주요 추진실적	교육주체
2019	노인, 주부, 청년층 등 취약대상	· (전자)금융사기 민생침해 피해예방 교육 · 7회 714명 교육/ 캠페인 5회 8,000명	소비자교육중앙회 공동사업
2020	시민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홍보	자체사업 (비대면)
2021	시민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동영상 제작·홍보	자체사업 (비대면, 11월 예정)

3)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제7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 ② (생략)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의 능력향상) ① 생략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는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이 ‘통신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사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6) 협력체계(안 제7조)

- 안 제7조는 통신사기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공동사업이나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통신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은행, 유관단체와의 공동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라. 종합의견

- 조례안은 통신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을 통신사기로 인한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 다만, 일부 조항이 법률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금융회사와 시민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권고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라 통신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 례안

(황인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3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1일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용연,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호평,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유 용, 이경선, 이광호,  
이성배, 이영실, 이태성,  
임만균, 장상기, 장인홍,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최웅식, 홍성룡, 황규복  
의원(42명)

## 1.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금융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6조)
-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72700000006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황인구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27	
회신일 : 2021.08.0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제1항에서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발생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제6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발생

###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15,500천원으로 연평균 103,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인권담당관)과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예산(평생교육국)을 참고하여 추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체계 구축은 처음연도에 교육 콘텐츠를 개발·구축(1회)하고, 교육인력 양성 및 홍보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 5년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515,500천원(연평균 103,100천원)
  - 총 비용 = 교육체계 구축+교육인력 양성+홍보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체계 구축 (제6조제2호)		65,500	-	-	-	-	65,500
	교육인력 양성 (제6조제2호)		60,600	60,600	60,600	60,600	60,600	303,000
	홍보 (제6조제1호)		29,400	29,400	29,400	29,400	29,400	147,000
	소계(b)		155,500	90,000	90,000	90,000	90,000	515,500
□ 총 비용(b-a)			155,500	90,000	90,000	90,000	90,000	515,50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체계 구축 ≙ 65,500천원

-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비 = 65,5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인권담당관) 참고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인권교육콘텐츠개발 용역비 : 65,500천원

○ 교육 인력 양성 ≙ 303,000천원

- 5년간 교육 인력 양성 비용 산식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교육인력 양성비용 = 60,6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인권담당관) 참고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인권강사양성 : 60,600천원

○ 피해 예방 홍보 ≙ 147,000천원

- 5년간 피해 예방 홍보비용 산식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피해 예방 홍보비용 = 29,4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평생교육국) 참고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평생교육 홍보 및 회의 : 29,400천원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us0@seoul.go.kr